

충 주 시 의 회
제114회 임시회
2007. 4. ()

조례안건심사보고서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7. 4. 13	2007. 4. 17	2007. 4. 17	2007. 4. 20	경제과장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	"	"	2007. 4. 17	"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하수시설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충주시 관내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자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

나.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우리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충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위생업종 중 목욕장업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6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여 업종간의 요금격차 및 요금부담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충주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과 각종 보조금지원 기준의 내용을 정함 (안 제3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내용에서 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충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지원한도를 규정 (안 제4장)
- 타시·도에서 충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비와 보조금 지원기준을 규정 (안 제5장)
- 시장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의 도지사와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 투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투자유치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기관단체의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6장)

나.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예우 및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이 기업인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함 (안 제6조 내지 제7조)
-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을 선정·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내지 제9조)
- 기업활동 촉진과 기업인의 경영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인의 날 행사개최 (안 제10조 내지 제11조)

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수도 부과업종을 6단계 ⇒ 5단계 축소
(안 별표1, 별표1-1, 별표 1-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본 조례안은 금번에 전문개정하여 상정되었으며 종전의 조례와 구별되는 점은 종전에 없었던 수도권권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과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기업전체 이전은 물론 타지역에 근거를 두고 우리 지역에 분공장을 설치하거나,

관내에 일정규모로 운영 중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할 때에도 투자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새로 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산자부 고시」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투자보조금은 상한선을 두고 국·도·시비가 정률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안 제2조 (정의) 4호 “연구소”의 정의에서 종전의 연구소 개념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만을 대

상으로 하였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하여 다양한 연구소를
받아 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제5조 위원회의 구성대상 위
원중 제4호 '관내 기업체 임직원'을 추가하였고,
제6조의 (기능)에서는 제3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 안 '제3장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지원 등'에서 제12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은 종전은 20명 이상이면 전체인원에 대한 교육훈
련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현안은 20명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장 수도권기업 투자 지원'에서 제18조 '투자보조금'을 3억
원에서 2억원을 줄였는데 이는 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 안 '제5장 타 시·도 기업 및 공장증설 투자 지원'에서는 제21조
의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하는 기업
에 대한 이전비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제23조, 제24조에서는 일정규모로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기업
이 우리시에 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와, 관내지역에서 일정규모
로 운영 중인 기업이 공장증설시에 시설투자비 지원기준액을 정
하였습니다.

- 안 '제6장 보칙'에서는 제28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서 대규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보조금의 분담 등)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타 시·도 이전기업 및 공장증축에 대한 지원의 경우 도와 시가 분담하는 비율과 절차를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지원 등의 취소 등)제1호, 제2호에서 종전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5년안에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사업은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구제와 사업규정이 서로 맞지 않았던 규정에 대하여 토지처분기간과 의무사업기간을 10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혜택을 받은 만큼 일정기간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2조(투자유치 포상금)에서는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해 6월과 12월 매년 2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포상금 신청절차와 투자금액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급은 수도권이전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비, 도비, 시비의 부담비율을 50 : 25 : 25%로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타시도에서 이전 및 증설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분담은 도비와 시비를 50 : 50%로 한다는 점이 다른점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종전 조례와 비교할 때 우리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위해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넓혀 기업유치를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 본 조례안은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우수기업이나 기업인을 우대하며 이에 따르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 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사랑운동을 통해서 기업인이 예우와 존경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4조 내지 7조는 우수기업인의 기준, 우수기업인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시책,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인 지정은 각종 포상을 받은 기업인과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예우 및 지원사업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특례 규정을 두어 우수기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해외 벤치마킹 우선 참여, 업체당 100만원 정도씩의 수출보험료 지원,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사업 등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

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우 및 지원중단은 산업재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기업인의 마음이 바뀌어 우수기업 지정당시 업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였고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는 이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시장이 우수기업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기업 음브즈맨 제도를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안 제3장에서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기업인과 별도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와 기업관련기관에서 인정받은 우수기업인과 별도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한·미FTA를 앞둔 시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 제4장에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제고 하는 것은 물론 기업인 예우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셋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기업지원을 위하여 좋은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장에서는 시장이 창업지원, 판매·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기업관련단체 지원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
- 안 제6장에서는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규제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어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조례

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유는 부과업종을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前) 회기인 제113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수도요금 부과업종을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요금부과는 상수도요금 사용량에 근거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과 업종을 통일시키기 위한 조정작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욕장업'의 개념에 포함되는 업종을 대중탕에 포함시키고,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영업용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 금번 부과업종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욕탕2종으로 분류되었던 '특수목욕장업', '한증막업'은 대중탕용으로 포함되고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와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의 두가지 업종은 영업용으로 통합시켰습니다.
- 욕탕2종에서 대중탕으로 변경되는 업소는 상록, 조선, 파크호텔에서 운영되는 대중탕에 대한 하수도 요금이 해당되고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되는 업소는 코오롱 스포렉스에서 운영하는 호암지 국민체육센터와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 갯고개에 위치하고 있는 구 선아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 본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부과업종 축소는 상수도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욕탕2종을 삭제하였고, 상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하수배출량을 산출하는 후속작업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질의 :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 국도비 정율부담에 의거 투자하는것임, 시비를 단독 투자하지는 않음

나.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 질의 : 없음

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상수도를 많이 쓰면 하수도료가 그에 상응하도록 부과 되는지?

○답변 : 그렇습

6. 심사결과

가.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나.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 원안가결

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붙임 : 수정조례안 1부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를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여”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조 례 안	수 정 조 례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이전기업”이라 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 에서 <u>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u>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시지역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여</u></p>